#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좋은이웃 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및 대상자: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이용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입소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기관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관할관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장이 정한다.

3)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4)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기관장은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이나 문자 등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인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되거나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기관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기관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월 이용료 부담액과 아래 표와 같다. 단, 경감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페이지 31 / 45 좋은이웃 운영규정 페이지 32 / 45

3.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1) 이용비용(수가 · 비급여 포함)

(1) 장기요양보험 수가 (30일 기준 - 월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등 급 | 1등급 | 2등급 | 3~4등급 |
|---|---|---|---|
| 수 가(1일 기준) | 93,070 | 86,240 | 81,540 |
| 월 계(30일 기준) | 2,792,100 | 2,587,200 | 2,446,200 |
| 일반대상자(20%) | 558,420 | 518,040 | 489,240 |
| 감경대상자(12%) | 335,050 | 310,820 | 293,540 |
| 감경대상자(8%) | 223,360 | 207,210 | 195,690 |

※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따라 개인부담금 비율이 다름.

(2) 비급여

| | | |
|---|---|---|
| - 식 | 대 : 4,000원(1회) * 1일 3회 * 30일 = 월 360,000원 | |
| - 간 | 식 : 1,000원 * 1일 * 30일 = 월 30,000원 | 비급여(식비) 총 합계 = 390,000원 |

(3) 계약진료 본인부담금 (월 2회 기준)

| 구 분 | 본인부담금 | | | |
|---|---|---|---|---|
|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기초(0%) |
| 초진(18,840) | 3,760 | 2,260 | 1,500 | 0 |
| 재진(13,370) | 2,670 | 1,600 | 1,060 | 0 |

(4) 장기요양수가(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포함한 납부금액(30일 기준)

| 등 급 | 1등급 | 2등급 | 3~4등급 |
|---|---|---|---|
| 일반대상자(20%) | 558,420 | 518,040 | 489,240 |
| 감경대상자(12%) | 335,050 | 310,820 | 293,540 |
| 감경대상자(8%) | 223,360 | 207,210 | 195,690 |
| 비급여(식비) | 390,000 | 390,000 | 390,000 |
| 일반대상자(20%) | 948,420 | 908,040 | 879,240 |
| 감경대상자(12%) | 725,050 | 700,820 | 683,540 |
| 감경대상자(8%) | 613,360 | 597,210 | 585,690 |

1) 비급여 항목은 식비, 간식비, 진료비, 이·미용비 등이 포함된다.

2) 비급여 항목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 영양식(뉴케어, 뉴트리웰 등)은 개인이 원할 경우 개별 부담해야 한다. (2) 외부 미용의 경우 개별 부담해야 한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와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4) 상기 항목 외에도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은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되, 별도로 추가 금액이 청구된다.

## (이용료의 납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기관은 익월 10일까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 말일까지 당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3. 계약 해지시까지 발생한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와 비급여를 익월 10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익월 말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기관장(대표자)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1)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4)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기타 기관 및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2.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3.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장(대표자)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재계약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본 기관은「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기관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입소하여 급식,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한다.

2.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식사 및 간식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관리, 화장실 이용하기, 프로그램 진행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치매예방 프로그램 진행 등 페이지 33 / 45 좋은이웃 운영규정

5)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재활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등

6) 간호 및 처치 – 건강상담, 투약관리, 체중 측정, 영양간호, 도뇨관리, 감염관리, 당뇨관리, 욕창관리, 통증관리, 낙상관리, 배설관리, 피부간호, 예방접종, 건강검진, 외부병원 진료 등 7) 기관환경관리 -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환경관리 등

8) 급식서비스 지원 – 식단표 작성 및 제공, 조식·중식·석식 제공, 간식 제공

3.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이용자에게 2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기관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입소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급변경, 경감대상자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보호자 동행 외출·외박 중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건강상태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